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292호

미아제11주택재개발정비구역 일몰기한 연장 고시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-490호(2010.12.30.)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된 미아제11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제6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기한을 연장하고, 「같은 법」 제20조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7월 9일
서울특별시장

1. 정비구역 일몰기한 연장 내역

구 분	정비구역 명칭	위 치	면 적 (㎡)	정비구역 지정·고시일	일몰기한	비 고
당 초	미아제11주택재개발 정비구역	미아동 791-108번지 일대	35,891.0	2010.12.30.	2020.3.2.	2년 연장
변 경					2022.3.2.	

※ 2020년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(2020.6.17.) 자문결과 : 조건부동의

- 대상지 남측으로 연결한 미아3주택재개발정비구역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연계 검토할 것

2. 사유 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제6항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일몰기한 연장

3.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(☎02-2133-7234) 또는 강북구청 주택과(☎02-901-6824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294호

신설1주택재개발정비구역 일몰기한 연장 고시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-383호(2008.10.30.)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된 신설1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20조제6항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의 해제기한을 연장하고, 『같은 법』 제20조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7월 9일
서울특별시장

1. 정비구역 일몰기한 연장 내역

구 분	정비구역 명칭	위 치	면 적 (㎡)	정비구역 지정 고시일	일몰기한	비 고
당 초	신설1주택재개발 정비구역	동대문구 신설동 92-5번지 일대	11,204.15	2008.10.30.	2020.3.2.	2년 연장
변 경					2022.3.2.	

2. 사유 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제6항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일몰기한 연장

3.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(☎02-2133-7188) 또는 동대문구청 주거정비과(☎02-2127-467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